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학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6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3. 제안이유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15. 1.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내용 추가(안 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사업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호)

다.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법률 제12378호로 '14.1.28.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15.1.29.일자로 시행되어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현행 조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재정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15.12.31.일자로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